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15
----------	-----------

제출연월일	2011. 02.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배넛소의 대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거창군 애우(艾牛)의 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배넛소의 대부대상이 되는 농가와 대부 제외대상 농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대부대상 : 군 관내 거주자로서 한우사육기반 시설 등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마을이장 · 개발위원장 · 노인회장 모두의 추천이 있어야 함

○ 대부 제외대상 :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거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신청농가

다. 배넛소의 대부 신청 및 대부대상 농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배넛소를 대부받으려는 농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고, 배넛소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 2명 이상으로 보증하여야 함

○ 배넛소 대부대상 농가는 거창군 농어업 · 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 · 선정토록 함

라. 배넷소의 대부두수와 대부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배넷소는 농가당 3두 이내로 대부하고, 대부기간은 배넷소를 대부 받은 날부터 30개월 이내로 함

마. 배넷소의 상환 및 상환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과 배넷소 사육농가의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배넷소 사육농가는 대부기간 내에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받은 두수대로 현금으로 상환하고, 성축은 사육농가의 소유로 함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사육농가는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리상의 변동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배넷소 대부계약의 해제사유와 사육농가의 손해변상 조치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육농가가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배넷소의 관리상 책임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넷소를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대부받은 배넷소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
- 군수는 사육농가에 대하여 상환기한 이전에 대부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사육농가의 귀책사유로 배넷소의 도난·폐사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육농가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농지법」 제2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5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5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 「축산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당초예산으로 확보(200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1. 12. ~ 1. 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거창군 애우(艾牛)의 사육 기반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배넛소의 대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가”란 농업인으로 구성된 가족단위의 경영주체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배넛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이 농가에 대부하는 암소를 말한다.

제3조(대부대상) ① 배넛소의 대부대상은 군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로 하되,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마을이장·개발위원장·노인회장 모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한우사육기반 시설을 갖춘 농가
2. 가축사육 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가
3. 배넛소 대부로 한우사육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4.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고 구축할 수 있는 농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배넛소를 대부하지 아니한다.

1. 배넛소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농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신청농가(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농가는 제외한다)

제4조(대부신청 등) ① 배넷소를 대부받으려는 농가(이하 “대부대상 농가”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부대상 농가는 배넷소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 2명 이상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배넷소 가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협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대부대상 농가의 선정) ① 대부대상 농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부대상 농가를 선정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부대상 농가가 선정되면 대부두수를 포함한 대부결정 사실을 신청 농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부두수 및 대부기간) ① 배넷소는 농가당 3두 이내로 대부한다.

② 배넷소의 대부기간은 그 대부를 받은 날부터 30개월 이내로 한다.

제7조(배넷소의 상환) ① 배넷소를 대부받은 농가(이하 “사육농가”라 한다)는 대부기간 내에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받은 두수대로 군수에게 현금으로 상환하고, 성축은 사육농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임 등으로 인하여 사육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육농가는 그 배넷소를 매각하여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상환하고, 그 잔액은 사육농가의 이득으로 한다. 다만, 사육농가가 희망하면 대부 당시와 동등한 다른 배넷소로 대체하여 남은 대부기간 동안 사육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불임 등에 대한 감정은 공수의가 판정하되,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생후 6개월령 암컷 한우 가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협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공제 및 보험 가입) 사육농가는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사육농가의 책임 등) ① 사육농가는 대부받은 배넛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육농가는 대부받은 배넛소의 사육장소를 변경하거나 관리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육농가는 대부받은 배넛소에 대하여 질병·폐사·실종·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육농가는 그 대부기간 중에 타인에게 사육관리권을 위탁하거나 양도 또는 매도할 수 없다.

제10조(상환기한의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사변(事變), 전염병, 그 밖의 재난으로 대부기간 내에 상환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 기간은 그 상환기한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1조(대부계약의 해제) 군수는 사육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대부받은 배넛소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상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배넛소의 관리상 책임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넛소를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사육농가에 대하여 상환기한 이전에 대부
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변상조치) ① 사육농가가 고의 또는 과실 등 그의 귀책사유로
배넷소의 도난·폐사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육농가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변상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협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